

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